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087호 2015. 5. 18.(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6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6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1호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654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658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66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 1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664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 1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677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14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 - 6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5.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마중로 123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5. 1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5-1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23-6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로 123 (오류동)	2012-10-25	"나가서 맞이한다" 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5-8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로 176 (오류동, (주)삼보그린필터)	2012-10-25	"나가서 맞이한다" 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06-7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0번길 25-1 (마전동)	2008-12-3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13-7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5번안길 42-13 (왕길동)	2008-12-31	완정로65번길의 안쪽으로분기되어있는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13-8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5번안길 42-9 (왕길동)	2008-12-31	완정로65번길의 안쪽으로분기되어있는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73-2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30 (오류동, (유)동방)	2011-11-15	인천 서구 정서진의 지명을 이용하여 '정서진로'로 명명 함.	
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6-27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8번길 5 (경서동)	2013-07-31	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고시일 : 2015-05-1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 서구 석남동 223-756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95번길 36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95번길 34	건물군 분할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입니다(intov)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 - 6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05.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II.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 · 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단독주택용지

기정				변경			
가구번호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9	3-1	501.4		9	3-1	232.4	
					3-3	269.0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9	3-1	획지의 분할	적정규모 획지분할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5.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계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 - 7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인천 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B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식회사 대광에이엠씨 대표 김남석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94번지
 - 나. 대지면적 : 51,786.2m²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13,201.628m²(지하 1층, 지상 1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 13개동(아파트 7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9개동
 - 마. 사 업 비 : 222,673,274천원
4. 사업기간 : 2015. 01. ~ 2017. 11.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 - 71호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05.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II.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 · 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단독주택용지

기정				변경			
가구번호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46-1	4-1-1	235.0		46-1	4-1	470.0	
	4-1-2	235.0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46-1	4-1-1	획지의 합병	적정규모 획지분할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4-1-2		

5.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계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15 - 654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8호, 2012.01.30)】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5. 1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29-14, 729-1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명칭】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신축공사
3. 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331.00㎡, 건축면적 154.16㎡, 건축연면적 591.9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하이플러스카드(주) 대표이사 옥선표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311호(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금곡동	729-14	대	209	209	아시아신탭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	-	-	
2	금곡동	729-17	대	122	122	아시아신탭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	-	-	
계				331	331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6번 참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3번 참조
9.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첨부 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658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5. 5.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연립주택용지(B-2) 60가구 1, 3, 4, 6-1, 7획지 **삭제**
 - 다세대 및 연립주택용지(B-1) 60가구 1, 3-1, 3-2, 3-3, 4, 6-1, 7획지 **신설**
- ※ 허용용도 변경으로 인한 획지조서 변경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7.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77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66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상업시설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연번	기 정					변 경 (안)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	2-16	9,796.1	1	1,207.6	공동개발 (권장)	2-16	9,796.1	1	1,207.6	공동개발 (권장)
			2	641.2				2	641.2	
			3	488.5				3	488.5	
			4	1,455.2				4	1,886.0	
			5	430.8						
			6	1,331.2				6	1,331.2	
			7-1	851.0				7-1	851.0	
			7-2	1,000.7				7-2	1,000.7	
			8-1	390.0				8-1	390.0	
			8-2	749.5				8-2	749.5	
		9	1,250.4			9	1,250.4			

※ 서구 심곡동 245-3, -4번지 획지 합병

○ 상업시설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2-16	4, 5 → 4	획지합병	건축규모 확장(증축)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664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없음)
 -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상업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Ⅲ-7	67,033.0	1	10,964.0		Ⅲ-7	67,030.5	1	10,964.0	
		2	11,738.0				2	11,738.0	
		3	6,416.0				3	15,367.5	
		4	8,954.0						
		5	7,171.0				5	7,171.0	
		6	7,121.0				6	7,121.0	
		7	6,956.0				7	6,956.0	
		8	7,713.0				8	7,713.0	

※ 서구 원창동 381-69, -70번지에 대한 획지분할 측량 결과값 반영 및 획지 합병

■ 상업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Ⅲ-7	3, 4 → 4	면적변경 및 획지합병	- 획지분할 측량에 따른 결과값 반영 - 건축규모 확장을 위한 획지합병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677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녹청자박물관 개관 후 4년 간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 개정함으로써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박물관 위치를 변경된 도로명 주소로 개정
-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서식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명확히 마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343,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서식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명확히 마련
- 녹청자박물관은 미등록 사료관에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공립 박물관으로 등록을 마침에 따라 박물관에 맞는 조직체제로 정비하고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성과에 걸 맞는 보수 및 승진체계에 대한 보완 조치 규정

2. 주요내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맞추어 운영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관련법규를 충족
- 공립박물관 보수체계에 맞추어 급여체계 변경
- 박물관 조직에 맞추어 선임연구원을 학예연구실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343,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사료관” 을 각각 “박물관” 으로 한다.

제3조 중 “경서동 209-3번지” 를 “도요지로 54(경서동)” 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당일” 을 “연휴” 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료 징수)” 를 “(수강료 징수)” 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13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체험장 사용료” 를 “수강료 및 사용료” 로 한다.

"별표1"를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 2"는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학특강 수강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방학특강 수강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방학특강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수강료 및 사용료(제13조제2항 관련)

1. 일일체험학습 수강료(1회 기준)

학습과정	교육내용	이용요금 (1인 1점 기준)	
		개인	단체(20인 이상)
물레성형	물레를 이용하여 원하는 모양 제작	9,000원	7,000원
흙가래성형	흙가래와 흙가래를 서로 붙여가며 성형	8,000원	6,000원
토우만들기	흙을 눌러가며 동물이나 사람을 제작	8,000원	6,000원
판상성형	흙 판을 이용해 사각접시 등을 제작	10,000원	8,000원
핸드페인팅	초벌 된 접시나 컵에 안료로 그림 그리기	8,000원	6,000원
상회도자기	완성된 컵 위에 안료로 장식 후 150°C에서 소성	5,000원	
	어린이날 행사 운영시 가격할인	4,000원	

- ※ ① 1일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
- ② 이용요금은 재료비, 소성비 포함 가격임(단, 소성을 하지 않을 경우 위 이용금액에서 3,000원을 감한 금액으로 산정)
- ③ 소성 후 직접방문 수령하지 않고 우송 또는 택배발송을 원할 경우 착불(수취인부담)
- ※ 소성이란 성형된 도자기를 가마에서 굽는 것을 뜻함

2.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수강료	수업시간
정규반A과정	월80,000원	주2회 / 1일 3시간
정규반B과정	월50,000원	주1회 / 1일 3시간
방학특강	30,000원	3일 / 1일 2시간

- ※ ① 정규반A과정, 정규반B과정의 소성비는 별도 본인부담
- ② 방학특강 수강료는 재료비, 소성비 포함 가격임

3. 가마소성요금

구분	소성대행 (외부에서의뢰시)	정규반 소성요금(1kg)
가스가마소성비	10,000원	6,000원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실내전시실을 갖춘 <u>사료관</u>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	-----
	2. “전시품”이란 <u>사료관</u> 이 수집 · 관리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2.	-----	<u>박물관</u> -----
제3조(위치)	박물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u>경서동 209-3번지</u> 에 둔다..	제3조(위치)	-----	--- <u>도요지로 54(경서동)</u> -----.
제12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	-----
	1. 1월 1일, 설날 · 추석 <u>당일</u>	1.	-----	<u>연휴</u>
	2. ~ 5. (생 략)	2.	-----	(현행과 같음)
제13조(<u>사용료</u> 징수) ① (생 략)		제13조(<u>수강료</u>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u>일일체험 및 도예교실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에</u>			② <u>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u>

의한 체험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일일체험 및 도예교실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체험장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체험장 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 수강료 및 사용료는 -----
--.

관계법령 발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시행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박물관 직원의 인사(승진 및 승급)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위원장을” 을 “위원장 1명” 으로 하며, “10명” 을 “10명 이상 15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녹청자 및” 을 “박물관 및 녹청자와”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선임 연구원” 을 “학예연구실장” 으로 한다.

제9조 중 “연구원 3명” 을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사 2명” 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직원의 임용 등)” 을“(직원의 임용, 승진, 승급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용한다” 를 “임용, 승진, 승급한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박물관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을 준용하고” 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급” 을 “5급”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예연구실장 : 7급에서 6급까지
3. 학예연구사 : 8급부터 7급까지
4. 사 무 원 : 9급부터 8급까지
5. 안 내 원 : 공무직

제14조제3항 중 “직원의 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를 “직원의 경력인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나누어 적용하며” 로 하고 단서 중 “다만,” 을 “다만, 관장의” 로 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목 “체험료 및 수강료 감면”를 “수강료 감면”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수강신청 등)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수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가마소성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칙공포에 맞추어 직원의 직급과 호봉을 다시 확정 한다.

[별표 1]

직원의 자격기준(제12조 관련)

구분	선발시험		자 격 기 준
	1차	2차	
관장	서류 전형	면 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의 도자기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박물관 및 사료관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역 향토문화 연구 및 서구 문화발전에 5년 이상 기여한 사람
학예 연구 실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1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학예 연구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기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도자기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관련자격증 소지자 ○ 미술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사무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기사,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안내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모단정하고 친절한 사람 (만20세 이상)

[별표 2]

직원의 사무(제13조 관련)

구 분	사 무 명
관 장	○ 녹청자 박물관 업무 총괄
학예 연구 실장	○ 학예업무 총괄 ○ 전시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 학술자료의 조사 및 연구 ○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학예 연구사	○ 도예교실 운영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 전시실 운영 계획 수립 ○ 가스 가마 및 전통 가마 관리 ○ 도예 정규 교육과정 운영 ○ 어린이날 도자기 무료체험 행사 운영 ○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방학 도자기 특강 운영 ○ 가마소성 ○ 이용고객 및 민원관리 ○ 소방계획 수립 및 방화관리, 안전관리 ○ 건물 및 시설물 종합관리·운영
사 무 원	○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보안, 청소, 환경관리 ○ 박물관 물품관리 ○ 카페테리아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입금 납부 및 실적관리
안 내 원	○ 녹청자 박물관 안내 ○ 녹청자 박물관 안내판 관리

[별표 3]

직원의 경력 인정(제14조 관련)

구 분	경 력 산 입 내 용
갑 경력(10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제2조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 복무 경력(의무복무기간에 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박물관 및 사료관에서 근무한 경력 ○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 교육, 연구기관에서 동일한 분야 종사경력
을 경력(8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단 공사에서 근무한 경력
병 경력(5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 개인이 설치한 박물관 및 사료관에서 근무한 경력 ○ 기업체(종사원 50인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

【별지 제2호서식】<신 설>

가마 소성 신청서

접수자 :

결제방법 : 현금 · 카드

납부번호		과 정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소 성 비	금액	원정 (₩) 영수함

※ 기재된 고객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되며, 녹청자박물관 정보 활용 (프로그램 안내문 발송, SMS 문자수신)에 대해 동의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

◎ 「인천광역시서구녹청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장 귀하

소성비 납부 영수필증

접수자 :

납부번호		모 집 구 분	정규반A, 정규반B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성 비	금액	원정 (₩) 영수함

◎ 위와 같이 녹청자박물관에 의뢰한 소성비 납부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함.

◎ 홈페이지 : www.nokcheongja.or.kr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장 귀하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u>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u>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 중 당연직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관광체육과장, 수탁자의 장, 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은 <u>녹청자 및 도예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u> 중에서 수탁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④ (생략)</p> <p>⑤ 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의 <u>선임 연구원</u>으로 한다.</p> <p>제9조(직원의 정원) 박물관의 직원은 관장, <u>연구원 3명</u>, 사무원, 안내원 등 6명으로 하고, 필요시 수탁</p>	<p>제4조(운영위원회 기능)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박물관 직원의 인사(승진 및 승급) 등에 관한 사항</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u>위원장 1명</u>----- <u>10명 이상 15명</u>-----.</p> <p>② ----- ----- ----- ----- ----- <u>박물관 및 녹청자와</u> -----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 <u>학예 연구실장</u>-----.</p> <p>제9조(직원의 정원) ----- ----- <u>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사 2명</u>-----</p>

자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임용 등)

- ① (생략)
- ② 직원은 수탁자의 장이 구청장의 승인 거쳐 임용한다.

<신설>

제14조(보수) ① (생략)

② 박물관 직원의 보수는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직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

- 1. 관 장 : 4급
- <신설>
- 2. 연구원 : 6급부터 5급까지
- 3. 사무원 : 9급부터 8급까지
- 4. 안내원 : 계약직

③ 직원의 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경력 인정은 총 10호봉을 넘지 못한다.

<신설>

-----.

제10조(직원의 임용, 승진, 승급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임용, 승진, 승급한다.

③ 박물관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 1. ----- 5급
- 2. 학예연구실장 : 7급부터 6급
- 3. 학예연구사 : 8급부터 7급까지
- 4. 사무원 : 9급부터 8급까지
- 5. 안내원 : 공무직

③ 직원의 경력인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나누어 적용하며, 다만, 관장의 -----
--.

제22조(수강신청 등) 조례 제13조에 따라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u>제22조(체험료 및 수강료 감면)</u>	<u>수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 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가마 소성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u>
<u>제23조(자체운영규정)</u>	<u>제23조(수강료 감면)</u>
<u>제24조(공인)</u>	<u>제24조(자체운영규정)</u>
	<u>제25조(공인)</u>

관계법령 발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6조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